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23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5. 9. 20.

발 의 자 : 강홍식의원외 2 인

1. 제안이유

-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9회 임시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.
-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.